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5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0. ~ 9.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5의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15의4. 지역상권 육성 관련 지자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1명을 둔다.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제14조제3항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둔다.

②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의 수립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5.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④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479”를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73”을 “4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5”를 “45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이하	22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4항 관련)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

총계	19
----	----

일반직 계	19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18
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3.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3급 또는 4급 이하	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6. ~ 20. (생략) <u>2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2. ~ 33. (생략) <u><신설></u>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5. (현행과 같음) <u>15의2.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u> <u>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u>15의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u> <u>15의4. 지역상권 육성 관련 지자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16. ~ 20. (현행과 같음) <u><삭제></u> 22. ~ 33. (현행과 같음) <u>제30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① 중소벤처기업부</u> <u>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행정</u> <u>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3항제1호에</u> <u>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u>

<신 설>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1명을 둔다.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제14조제3항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둔다.

②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한시정원) ① 삭 제
② ~ ⑤ (생 략)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의 수립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5.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④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한시정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9	481	+2
·	·	·	
·	·	·	
일반직 계	473	475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455	457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